

#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對한 對應論理開發에 關한 研究(下)\*

金 汝 善\*\*

|                  |                        |
|------------------|------------------------|
| I. 序 論           | 4. 反덤핑措置               |
| II. 反덤핑 法制와 運用現況 | 5. 再審制度                |
| 1. 反덤핑法制的 構造     | 6. 特殊한 規定              |
| 2. 運用機關 및 節次     | IV. 反덤핑 規制에 對한 對應方案 檢討 |
| III. 中國 反덤핑法の 內容 | 1. 政府의 政策的 努力          |
| 1. 덤핑調査          | 2. 企業의 對應方案            |
| 2. 産業被害調査        | 3. 産業被害 事前豫告制          |
| 3. 調査의 節次的 規定    | V. 結論                  |

## 5. 再審制度

### 1) 概觀

반덤핑법상 재심은 수입국에서 내려진 반덤핑 조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합법성을 시비하거나 조치시행이후 종료 및 기간연장 그리고 내용의 변경이나 반덤핑 관세의 환급과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제도는 크게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과 사법 재심(judicial review)으로 나누어진다. 재심제도는 반덤핑제도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조치이후의 상황 변동을 인정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반덤핑제도가 무역보호주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KRF-2003-041-B00592)

\*\*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WTO 반덤핑 협정은 당국은 그 직권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재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덤핑관세의 지속적인 부과에 대한 재심을 하도록 하는 일반재심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반덤핑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일로부터 또는 가장 최근의 재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는 일몰(sunset)재심 규정을 두고 있다.<sup>27)</sup>

조례는 최종판정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반덤핑세의 징수여부 결정 및 추가 징수, 관세환급, 신규 수출업자에 대한 징세 결정 불복하거나 또는 재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거나 법원에 소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법체계는 재심제도에 대하여 아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재심으로 일몰재심, 중간재심, 덤핑관세 환급재심 그리고 신규수입업자에 대한 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 재심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완비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 2) 行政 再審制度

### (1) 신규수출업자 재심제도

#### ① 신청자격

신규수출업자 재심(new shipper review)<sup>28)</sup> 은 조사 기간 내에 조사대상 상품을 중국에 수출한 적이 없는 해당 국가(지역)의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반덤핑 조치 후에 단독으로 반덤핑 세율의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기간 중 수출국에 수출실적이 없으나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신규업자가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출에 대하여 덤핑 조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재심을 신청하는 신규 수출업자는 반덤핑 조사 기간 내에 조사대상 상품을 중국에 수출한 수출업자 및 생산업자 그리고 무역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재심 신청 신규 수출업자는 반덤핑 조사 기간 종료 후에 중국에 일정물량의 조사 대상 상품을 수출한 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정상 수출가격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7) 협정 제 11.2, 11.3 조.

28) 「신규 수출업자의 재심에 관한 잠정 규칙 (反傾銷新出口商復審暫行規則)」(상무부 2002년 제21호령).

## ② 재심 절차와 내용

신규 수출업자의 재심은 반덤핑조치 실시 후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적인 수출일자는 영수증 발행 일자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상무부는 재심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내 기존 반덤핑 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내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다. 그리고 30일 이내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거부 결정의 경우에게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은 재심 입안 공고일로부터 신청인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징수를 중지하나, 반덤핑 판결에서 "기타 회사"에 적용하도록 한 관세율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심 조사기간은 신청전 6개월로 한다. 이외에 조사절차는 기존 반덤핑 조사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단, 수입품이 최초로 독립 구매자에게 판매된 가격에 근거하여 수출가격을 추산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반덤핑관세를 제외하지는 않는다. 예비판정 후 15일 이내에 상무부에 가격승인을 제출할 수 있다. 신규 수출업자에 대한 재심 조사기간은 입안일로부터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관세환급 재심제도

수입업자가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이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상무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신청시 ① 신청인과 공급업자의 명칭, 주소, 관련 사항 ② 신청 전 6개월 동안 조사상품이 국내 평균 판매가격·거래건수·총 금액과 중국에 대한 평균 수출가격·거래건수·총 금액 및 제3국에 대한 평균 수출가격·거래건수·총 금액 ③ 신청전 6개월 동안 조사대상 상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④ 덤핑 마진 추산을 위한 각종 조정항목 및 덤핑마진 계산 결과 ⑤ 해당 상품 수입계약서, 영수증, 선하증권, 지불증명의 사본 및 신청인의 관세 납세필증 ⑥ 신청인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기타 내용을 반덤핑 조사 질의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및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은 확정 덤핑마진과 새로 확정된 덤핑마진의 차액이다. 심사 과정에서 상무부가 덤핑마진이 높아진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 중간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반덤핑세의 실제 납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무부는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sup>29)</sup>

29) 「반덤핑 관세 환급에 관한 임시 규칙」(反傾銷退稅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22号令).

## (3) 중간재심

## ① 신청 및 조사

중간재심은 반덤핑 조치 기간 내에 조치 시행 후 변동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근거하여 계속 반덤핑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sup>30)</sup> 반덤핑 조치관련 이해 당사자는 모두 상무부에 중간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중간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 전 12개월 동안 중국에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수출한 적이 있어야 하며 ② 수량이 수출가격을 확정할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또한 상무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중간 재심 신청은 반덤핑 조치 시행 1년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중간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국내산업에 통지하며, 중간 재심 신청 접수일부터 60일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공고한다.

중간 재심의 조사기간은 재심 신청이 제출되기 이전 12개월 동안이다. 예비판정 후 15일내에 가격승낙을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재심 기한이 만료되기 15일 전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덤핑관세의 유보·수정·취소를 건의하여야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중간 재심은 입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반덤핑 조치 종료 1년 전에 국내 산업의 신청으로 개시된 중간 재심의 경우 일몰 재심과 통합 조사하고 동시 판결할 수 있다.

## ② 대상 및 범위

국내 산업의 중간 재심은 기존 반덤핑 조사에서 언급된 전체 또는 일부 국가의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에 한할 수도 있다. 재심은 신청한 주체에 따라 심사범위가 다르다.

먼저,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신청한 중간 재심은 신청인과 관련된 조사대상 상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덤핑마진에 한하여 조사한다. 둘째, 국내 산업이 중간 재심을 신청한 경우, 수출국의 모든 수출업자 및 생산업자의 조사대상 상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덤핑마진을 조사한다. 기존의 반덤핑 조사에서 확정마진이 0이거나

30) 「덤핑 및 덤핑 마진 중간 재심에 관한 임시 규칙」(傾鎖及傾鎖幅度期中復審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23号令)

무시할 만한 수준이어도 수출업자와 생산업자를 조사한다. 국내 산업이 기존의 반덤핑 조사에 관련된 국가의 개별적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에 한하여 중간 재심을 신청한 경우, 상무부는 지정된 수출업자 및 생산업자와 관련된 조사대상 상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덤핑마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셋째, 수입업자가 중간 재심을 신청한 경우, 상무부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낸 수출업자 및 생산업자의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덤핑마진에 한한다.

그 외에 상무부가 직권으로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시장 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2003년 9월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관에 대하여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인정된다는 반덤핑 최종판정을 하였다.<sup>31)</sup> 반덤핑관세 부과 후 국내 냉연강관에 대한 수급상황의 변화와 국제시장의 급속한 변동을 이유로 하여 상무가 직권으로 재심을 결정하였다.<sup>32)</sup> 조사결과 첫째, 세계철강소비의 대폭적인 성장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의 상승, 둘째, 중국 내 냉연강관시장의 수급 불균형 및 가격의 상승 셋째, 국내산업의 피해의 현저한 감소 등을 근거로 반덤핑 징수 중지 결정을 하였다.

#### (4) 일몰재심

##### ① 개요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원칙적으로 그 부과일로부터 혹은 가장 최근 재심일로부터 5년 이내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일몰재심(sunset review) 혹은 5년재심(5-year review)이라고 한다. 일몰재심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절차나 조사 내용에 대하여 「규칙」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몰재심은 기본적으로 기존 반덤핑 조사절차에 의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아래에서 일몰재심 판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중점조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중국 최초의 반덤핑 규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산 신문에 대한 조사 결정이었다. 관련 당국은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신문지 수출이 국내산업에 야기한 피해가 입증된다고 1998년 7월 예비판정하고, 1999년 6월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판정

31) 商務部 2003年 第 50号 公告(9.23).

32) 商務部 2004年 第 22号 公告(5.17).

을 내렸다. 캐나다와 미국 기업은 이 사건에서 無對應으로 일관하여 59%~78%의 덤핑율을, 한국은 한술제지가 예비 판정에서 받은 17.11%의 덤핑마진이 최종 판정에서 9%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기타 회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5%의 덤핑 마진율이 적용되었다.<sup>33)</sup> 2003년 7월 반덤핑조치 기간 5년이 도래하여 60일전 국내산업의 신청에 따라 상무부는 재심을 결정하였다.<sup>34)</sup>

일몰재심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덤핑조사기한으로 정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을 산업피해 조사기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조사 후 조치를 중지하게 되면 조사산품 및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의 확대로 인하여 산업상황은 종합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라는 판정을 하면서 반덤핑 관세 징수를 연장하였다.

## ② 조사내용

일몰재심에서의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동종 상품은 조사 기간 내 질적으로 현저한 제고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나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 즉, 물리적 특성, 화학성질, 원재료구성, 생산기술, 상품용도, 판매경로(유통망)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일몰재심 신청 시 기존의 7개 국내산업에서 5개 산업을 더하여 총 12개 산업이 신청하여 절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체소적격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둘째, 덤핑의 지속 혹은 재차 발생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조사 기간내 덤핑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생산업자와 수출업자가 응소등록을 하지 않아 상품의 국내 판매 가격, 제3국 수출가격, 생산원가, 비용, 이윤, 대중 수출 가격 및 관련조정요소와 수치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입수가능정보에 근거하여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확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캐나다는 9.21%, 미국은 40.64%의 덤핑이 지속되었다. 단, 한국기업은 조사 기간내 대중 수출이 없었다.

셋째, 따라서 덤핑의 지속 혹은 재차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하고 있다. 덤핑의 지속발생 발생가능성을 ① 국내 신문지산업의 생산능력, 생산량, 설비가동률, 재

33)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公告, “關於對原產于加拿大,韓國和美國的進口新聞紙反傾銷調查的初步裁定”,(一九九八年 第2号);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公告,(一九九八年 第4号). 자세한 것은 김여선, “중국반덤핑조치,” 『해사법연구』, 제11권 1호, 해사법학회, 1999, pp. 157-178 참조.

34) 商務部 2003年 第28号公告(7月1日).

고량, 국내시장소비량, 수출량 추세를 검토하였다. ② 관련국의 제3국 저가수출에 대한 추세와 수량을 조사하였다. ③ 제3국의 조사 상품의 수출과 규제에 대한 검토를 하여 인도 정부가 1998년에 관련 미국과 캐나다기업의 신문지에 대하여 각각 23.85%와 20.44%의 덤핑마진율을 결정하였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부터 캐나다 33.55%, 한국 43.24%, 미국 39.20%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멕시코의 캐나다와 미국산 신문지에 대하여 2003년부터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수출국은 반덤핑 조치가 없었던 1995년부터 1997년 시기에 중국에 대량으로 수출을 한 경험 등을 고려하여 판정하였다. 반덤핑조치 후 중국에 대한 수출은 비록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덤핑으로 점유율을 상승시키고자하는 영업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차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넷째, 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차발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소비량, 생산능력, 국내산업의 생산량, 국내산업 판매량, 동종상품의 가격, 판매수입, 세전이윤, 재고, 공장가동율, 시장점유율, 노동생산율, 평균임금, 취업률, 투자 수익률, 현금유동량, 투자 및 대부상환 등 국내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보면 조사 기간내 국내산업은 반덤핑조치 시행 전 피해상황에서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02년 이후 국내산업의 효율이 하락하여 신문지 수입이 2002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신문지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백분점 아래로서 무시할만한 소량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사 상품과 중국 내 산업상황의 악화와는 관계는 없다고 판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덤핑 조치 중지 후 피해발생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다. 조사상품의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2005년 당장 반덤핑조치의 종료에 따라 중국시장의 약 45%가 수입품이 될 것이며, 이는 공급이 수요를 급격히 초과하는 현상으로 초래될 것이다. 또한 조사 기간 내에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입품 가격과 중국시장과 상관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중국은 신문지 관세율을 2003년에 8.5%인하하였고 2006년에는 5%를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상품의 이익은 상승할 것이므로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 3) 司法再審

#### (1) 행정심판

반덤핑 최종판정에 불복할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대한 결정 및 추징, 관세 환급, 신규수출업자의 재심에 대한 불복, 중간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 반덤핑법 체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사법적 재심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덤핑 관정을 중요한 행정행위로 파악하여 행정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중국의 행정심판제도는 1999년에 확립된 제도로서 비교적 늦은 시기에 행정심판법(行政復義法)을 제정함으로써 확립되었다.<sup>35)</sup>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남용을 감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행정심판법에서 10개항의 구체적인 행정심판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반덤핑 관련 실무부서인 상무부에서 「상무부행정심판실시규정」(商務部行政復義實施辦法)을 발표하여 상무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의하여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상무부의 반덤핑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법제국(條約法律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5일내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수리여부 결정 후 7일내 피신청인인 상무부 공정무역국(公平貿易國)에게 이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원칙상 서면 방식으로 하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현장실사 등과 같은 실질조사가 병행된다.

## (2) 행정소송

### ① 당사자 및 심리안건

반덤핑 행정행위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원고가 되고, 상무부와 관세세척위원회는 피고가 된다.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제삼자로 소송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는 반덤핑 행정행위를 한 기타의 중국 국무원의 관련부서를 지칭한다. 반덤핑 행정소송의 대상은 ① 덤핑 및 덤핑마진, 피해와 피해마진에 대한 최종판정 ②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및 소급징수, 환급 그리고 신규수출업자에 대한 부과결정 ③ 반덤핑관세의 징수 보류, 수정, 취소 그리고 가격승낙의 재심판정 ④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정에 의한 기타 반덤핑 행정행위 등이 있다. 다만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의한

35) 「中國行政復義法」(主席令第16号, 1999年).

‘기타 반덤핑 행정행위’가 어떤 행정행위인지는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다.

조례는 최종 반덤핑 관세의 부과결정은 인민법원에 제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조례 53조).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잠정 반덤핑 관세, 보증금과 담보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하여 최종반덤핑관세의 부과결정만이 심리안건이 되는 것은 일체의 반덤핑관련 행정행위를 제소대상으로 하는 「규정」과 「조례」가 상충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반덤핑 조사기각 결정(조례 16조), 조사 중지 결정(조례27조)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영향이 지대한 것에 반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타 반덤핑행정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견해도 있다.<sup>36)</sup>

### ③ 관할과 사법심사

중국의 법원은 심급 및 관할하는 사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각급 지방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문인민법원에는 군사법원, 해사법원, 철도운수법원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법원 조직 및 재판제도의 특징은 이른바 '4급 2심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네 가지 등급 또는 서열로 나뉘어져 있고, 심급제도로는 우리와 같은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층인민법원이 1심 재판을 한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의 재판이 중심이 되고, 중급인민법원이 1심을 맡은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의 재판이 중심이 된다.

반덤핑 행정소송의 1심 관할은 피고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나 고급인민법원이 된다. 중국 상무부의 소재지가 북경이므로 관할은 당연히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나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하는 중급인민법원이 될 것이다. 2심 법원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이 될 것이다.

사법심사기준은 법원이 피소된 반덤핑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범위와 정도를 말한다. 이는 법원의 심리안건의 핵심이며 법원이 반덤핑 관련 행정행위의 개입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법심사 기준은 한편으로 행정기관과 법원간의 권력과 책임의 분배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규정」 제 6조는 법원은 행정소송법 및 기타 반덤핑과 관련 있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피소된 반덤핑행정행위의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합법성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여 사실심과 법률심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

36) 劉敬東, 『反傾銷案件行政復議, 司法審查制度的理論與實踐』, (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4), pp 165-166.

고 있다.

#### ④ 증거와 판결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주의에 의하여 상무부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반덤핑 관련 행정행위의 증거와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된다. 법원의 합법성 심리는 주로 피고의 조사기록에 의하고, 원고는 그 주장의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반덤핑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리할 때 피고의 행정행위시에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출하여도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증거가 명확하고 법률에 의한 적법절차인 경우 유지판결을 하고, 주요증거의 부족, 법률과 행정법규의 적용착오, 적법절차의 미준수, 직권남용 혹은 초월인 경우에는 재결정 판결을 한다. 또한 법률 혹은 사법해석 규정에 의하여 기타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변경판결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sup>37)</sup> 행정소송법의 기본원칙은 단지 ‘유지, 혹은 ‘재결정’의 판결만이 가능하며, 변경판결은 불가능하다.<sup>38)</sup> 따라서 양자가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6. 特殊한 規定

### 1) 迂回덤핑

우회(circumvention)덤핑이란 반덤핑조치의 대상인 물품의 생산 및 선적 방법 등을 변경하여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례는 “상무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피해조사규정은 우회덤핑행위의 유형을 ① 3국에서 조립 또는 가공 수출, ② 형식변경 또는 가공하여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관세세목으로 수출, ③ 부품·부분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조립, ④ 반덤핑관세 징수 후 상품을 발전시켜(後期發展產品)수출 ⑤ 기타 등 5가지로 규정하였다. 이는 미국이나 EU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우회덤핑수출을 확정할 때

37) 「반덤핑 행정안건 심리에 관한 문제의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反傾銷行政案件應用法律若干問題的規定)(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 2002. 9.11).

38) 中國 「行政訴訟法」 第 53 條.

고려요소로 ① 반덤핑조사 개시 전후에 규칙에 규정된 우회덤핑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② 덤핑국 또는 제3국에서 수입된 반덤핑관세 징수대상 상품의 부품 가치가 해당상품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③ 덤핑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입품 중 원재료로서의 반덤핑관세 징수대상 상품 가치가 해당상품 전체 원재료 가치에서 비교적 큰 비율을 점하는 경우 ④ 반덤핑관세 징수대상 상품을 조립 또는 가공한 상품의 가치 증가분이 조립 또는 가공 상품 가치의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⑤ 회피행위가 반덤핑관세 징수의 효과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⑥ 반덤핑관세 징수대상 상품의 덤핑과 피해사실 ⑦ 기타요소 등이 있다.

2000. 12월의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화란, 독일을 원산지로 하는 이염화메탄 반덤핑 (안) 예비판정에서 우회덤핑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수입상과 외국수출기업이 첫째, 상품명위조수입, 둘째, 제3국을 통한 수입으로 원산지 회피, 즉 다국적기업간 내부거래를 통한 대중 수출 셋째, 제삼국에 설립된 본사와 명의를 달리하는 자회사를 통한 위탁수출의 방식이 현저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sup>39)</sup>

업계와 학계에서는 우회덤핑은 글로벌 경제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엄격한 우회덤핑방지규정은 외자나 기술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우회덤핑 제도는 덤핑과 연계된 측면에서 현재 각국은 덤핑법제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는 결국 별개의 불공정무역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40)</sup>

## 2) 公共利益 規定

반덤핑 조치는 공정거래와 고용유지 등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생산업자나 소비자는 보다 높은 가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들의 후생은 오히려 희생된다는 현상도 발생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치의 판정 시 이들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취지이다. EU의 경우에도 공동체이익에 부합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피해조사규정에서는 “조사기관이 산업피해조사와 판정을 진행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반덤핑조치가 공공이익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덤핑수입상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이를

39) 商務部 公告 2001年 第 11号.

40) 王琴華, 『反傾銷規避與反規避』, (器械工業出版社, 2003) pp 141-149.

삭제하고 덤핑 수입품의 사용자·소비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만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반덤핑조례는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 반덤핑조사를 종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무부는 가격약속의 접수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 이익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집행이 중국의 공공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상무부가 할 경우에는 해당 가격약속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3) 반덤핑 條例의 報復措置

一方的 貿易조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무역관련 제도 및 활동과 관련하여 關稅 및 非關稅措置를 통하여 보복을 가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여기서 일방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는 국가가 자의적인 판단 하에서 취하는 조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무역장벽조사규칙」(對外貿易壁壘調查暫行規則)을 제정하여 '일방적무역조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일방적 무역조치와 유사한 보복조치의 성격을 가진 규정을 덤핑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뿐만아니라 합법적인 규제가 인정되고 있는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법제에서도 두고 있다. 「반덤핑條例」는 제56조에서 “어떤 국가 혹은 지구가 중국 산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하면 중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그 국가나 地區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보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덤핑 조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 행위로서 수출국은 이에 대하여 상응하는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WTO 가입 후에도 오히려 대중 상품에 대한 규제의 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유사조항을 두고 있다. 「화물무역관리조례」(貨物進出口管理條例) 제 6 조, 「반덤핑 조례」 제 56 조, 「세이프가드 조례」(保障措置條例) 제 32 조, 「반보조금조례」(反補貼條例) 제 55 조 등이 대표적이다.<sup>41)</sup>

41) 자세한 것은 김여선, “한·중 통상마찰의 법적 문제” 『통상법률』 (2000. 12. 법무부), pp.43 ~ 59 참조.

## IV. 反덤핑 規制에 對한 對應方案 檢討

### 1. 政府의 政策的 努力

반덤핑규제는 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국시장을 특정한 국가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국의 대한 반덤핑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중간의 통상관계에서 발생된 정책적인 측면도 크다고 할 것이다. 반덤핑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지만 정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 貿易收支 統計의 改善 努力

양국간의 통상마찰은 누적되고 있는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1998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중국의 外經貿部의 「통상백서」는 한중 통상관계에 있어 무역역조 현상을 가장 큰 통상현안으로 분류하고 있다.<sup>42)</sup> 일반적으로 시장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무역역조현상은 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반덤핑과 같은 통상마찰을 해결하기위하여서도 이러한 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 측 통계로는 대중 수출이 49,763백만 달러이고 수입이 29,585백만달러여서 20,178백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 측 통계에 의하면 수출이 27,809백만달러이고 수입이 62,166백만달러여서 무역수지 적자는 34,357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sup>43)</sup> 양자간 무역수지 통계는 약 150억달러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수지의 통계상 오류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sup>44)</sup>

42)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經濟科學出版社, 2004), pp. 243-251.

43) kotis 무역통계자료.

44) `93년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부터 무역불균형 문제가 양국간의 통상의 체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94년 양국은 무역통계 차이에 대한 공동 조사를 위한 '중미 무역통계조사 실무소위'(中美商貿聯委會貿易和投資工作組貿易統計小組)를 구성하여 `92년과 `93년의 무역 수치를 근거로 「무역통계 관련 보고서」(中美商貿聯委會貿易和投資工作組貿易統計小組工作報告)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對美 수출품 중 통계상 금액의 20%만이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되었고, 80%는 제삼국을 통하여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이중에서 60%가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SOURCE: US Department of Commerce(1999); USITC,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n the United State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Publication 3229)(Investigation No. 332-403, Sep. 1999), pp. 2-9.; 中國國

이를 위하여 첫째, '93년에 체결된 「統計協力諒解覺書」와 '94년에 체결된 「韓·中稅關協力 및 相互支援協定」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단독으로 조사하거나,<sup>45)</sup> 관계장관 회의나 실무회의를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합동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통하여 한·중간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대중 투자기업과 한국 내 모 기업을 포함한 우리 나라와의 무역관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한중 무역의 상당부분은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중계무역의 양만큼 양자간 무역통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의 상당부분은 대중 투자에 따른 현지법인의 수입에 따른 영향이 크다. 현지법인의 제 3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국무역흑자 유발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sup>46)</sup> 최근에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 國務院令 416号, 2004. 8.18)를 제정하여 원산지규정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sup>47)</sup>

## 2) 對中 反덤핑 規制의 慎重

1987년에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총 214건의 산업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한·중간 교역의 확대에 따라 한국의 대중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1987년 중국산 양고라 토끼털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중국에 대하여 총 47건의 산업피해구제 관련 제소가 행하여졌다. 그 중에서 반덤핑관련 규제가 31건이고 세이프가드 규제가 16건으로 전체 규제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1997년부터 반덤핑제소가 급증하고 있다.<sup>48)</sup>

중국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는 데 보

務院新聞辦公室, “關於中美貿易平衡問題,” 『人民日報』, 1997. 3. 22; Ma Xiaoye-Zheng Handa, “China and United States “Rule of Origin” and Trade Statistics Discrepancies,” Journal of World Trade(1998. 2), p. 42.

45) 「한·중 세관협력 및 상호지원협정」 제8조.

46)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실, “대중투자의 수출입 효과”, (2002, 2. 27)

47)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국무원령 416호, 2004. 8.18)》를 제정하여 농수산물과 같은 一次產品에 대하여서는 “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criteria)”을 채택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가공 또는 제조된 수입화물은 동 화물에 대해 최후로 실질적인 경제적 가공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주요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과 관련하여서 30%를 기준을 채택하는 등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48) [http://www.ktc.go.kr/pds/view.asp?num=15&sch\\_chk=n&idx=749&curpage=1&blockpage=1](http://www.ktc.go.kr/pds/view.asp?num=15&sch_chk=n&idx=749&curpage=1&blockpage=1)

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가 중국 상품에 대하여 특별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산상품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의 WTO 가입 협상에서 가입 후 12년간 반덤핑 사안에서 미 통상법상 비시장경제국가 조항을 적용하는 데 합의하였기 때문에<sup>49)</sup>, 한국의 비시장경제국가에 근거한 산업피해 판정을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하여 비시장경제국가의 적용 요건을 너무 확대한다면 마찰에 직면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 3) 機關間 協調體系 強化

양국의 산업피해 구제 관련 기관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측의 산업피해 구제 제도 및 운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이미 이러한 내용의 협조에 대하여 양해한 바 있으며, 또한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한 조사기법 및 운영 경험의 상호 교류와 상호간에 이루어진 산업피해 구제조사 및 판정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sup>50)</sup>

그 동안 무역위원회와 중국의 상무부는 총 5차례의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하였다. 특히 제 5차 회의에서는 양국간 급증하고 있는 반덤핑조치의 사전적 해결을 위한 논의 가졌다. 양국은 반덤핑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간 수입급증 물품에 대한 통계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중국 반덤핑조사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하였다. 산업피해발생에 따른 반덤핑제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양국간의 수입급증 물품에 대한 통계자료의 상호 교환 범위 확대 및 교환시스템 개선에 합의하고 현재 수입급증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교환자료에 전년 대비 가격하락폭이 비교적 큰 품목(20~30개)도 추가토록 하며, 자료교환 시기를 분기 또는 연도마감 30일 이내로 확정하고 중국이 업종별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업피해 사전협의 시스템'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양국 반덤핑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덤핑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개시, 현지실사 및 산업피해에 대한 평가지표 운용현황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sup>51)</sup>

49) US-CHINA BILATERAL MARKET ACCESS AGREEMENT(1999. 11. 15), Protocol Language Part, Non-Market Duration.

50) 「한-중 산업피해 구제분야에서의 협력증진 양해각서」(1999. 8. 24).

#### 4) 自由貿易協定 締結의 研究

반덤핑규범이 역내 회원국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WTO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최혜국 대우의 예외조항인 GATT XXIV 5(b), 5(c) 및 8(b)에 따라 반덤핑 규범을 역내 회원국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FTA를 비롯한 지역경제통합체의 경우에 반덤핑규범은 회원국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역내 국가의 합의에 의해 반덤핑규범은 역내 무역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는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나, 반덤핑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한중간 FTA의 문제에서 무역구제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과급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EU는 로마조약을 통하여 조약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과도기에 한해 개별 회원국의 반덤핑규범을 인정하고, 과도기가 지난 이후의 역내교역에 대해서는 반덤핑법의 적용을 금지하였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에서도 반덤핑조치의 철폐를 확인하고 있다.(The Australian-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1988. 제 4조) 한국과 칠레간의 FTA도 반덤핑조치를 그 대로 존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무역구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유불리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도 장기적인 정부 정책적 입장에서의 반덤핑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企業의 對應方案

### 1) 對應段階의 主意

반덤핑 제소된 기업은 중국정부의 조사에 대한 정보 수집, 향후 추진 계획 수립과 덤핑 업무에 대한 관련 서류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기업내의 법률전문가 내지는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덤핑 관련 모든 서류의 제출 및 의견 교환은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인 변호사를 통해야 하므로 현지 변호사 선임은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반덤핑 사건은 신청인의 승률이 거의 절대적이며 피제소측인 외국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 사건에서 적기 응소, 연기 답변

51)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신청, 답변서 작성과 완벽한 정보 제공, 보충자료의 적기 제출, 강력한 항변 능력, 공청회 전략, 실사단계에서의 전략 그리고 합리적인 구제조치 채용 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의 선임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관건이다. 변호사의 선임은 현지법인의 추천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덤핑제소 경험과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지 변호사와의 면담 및 변호사의 덤핑실적에 대한 조사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반덤핑 법제는 상세한 계산방법을 이용하는 아주 기술적인 준수법적 절차이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나 재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계능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정확한 계산과 해당 지표 평가와 더불어 적절한 기업의 상황에 부합하는 자료의 제출은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이 된다. 따라서 반덤핑 전문변호사의 선임과 이를 자문하는 회계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계사는 기업의 회계 및 재무를 이해할 수 있는 국내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 調査段階에서의 對應方案

### (1) 신청인 자격 검토

신청자 자신의 산량비율이 국내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다른 국내산업의 위임장과 당사자가 협회 혹은 商工會 등 조직인 경우 그 대표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MDI (안)에서 신청인인 연태만화(烟台万華)는 중국유일의 MDI 생산기업이며, 중국 유일의 MDI 수입상으로 국내산업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2) 동종상품

실무상 주관기관은 단지 상품명칭과 세칙번호만 公告한다. 실질적으로 관세분류번호는 최종관세 부과에서 의의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세칙번호 하에 여러 개의 상품이 포함될 수도 있다. MDI 案에서 중국세관의 稅番은 계속 변동되어 왔으며, 기타 상품과 같이 세 번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세관에는 MDI와 관련된 수입량과 가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청인은 소위 가격구간이라는 비교적 복잡한 추정계산식을 만들고 있는데, 세관보고가격은 바로 이

구간의 상품에 부합하는 것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구간의 상품을 모두 가격 통계로 잡고 있다. 또한 TDI 案에서 신청인은 일본의 TDI에 대한 수입량 조사에서 같은 세 번의 MDI를 합하여 수입량을 계산하여 한해의 TDI와 MDI수입전량이 바로 TDI 수입량이 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3) 신청서 및 답변서상의 통계검토

아트지사건에서 신청인은 신청서상에 당연히 덤핑의 존재, 피해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없이 단지 본인의 증명을 그 근거로 제시한 적이 있다. MDI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재무 재표와 신청서상의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신청인은 상장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공개된 재표재표에서 MDI생산이 95%이상이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분석은 당연히 MDI와 관련되어야 하며, 신청서에는 2000년 세전이윤이 전년대비 42.96%인데 반하여 재무재표에는 63.51%라고 기재하고 있다. 판매량에 있어서도 재무재표에는 55% 신청서상에는 39.64%라고 하고 있다.

답변서는 영업활동(구매, 생산 및 판매), 회계 정보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질문서의 해석, 자료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중국 변호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중국변호사를 통해 제출해야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설명을 중국 변호사를 통해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제출은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대비하여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최대 10일간 기한연장이 가능하므로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 (4) 실사준비

실사를 위하여 회사소개 자료, 매출 보조부(매출장), 내수매출에 대한 회계전표, 원가 및 재고자산 수불부, 추가 거래 Sample자료, 매출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 판매비, 관리비, 재무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실사팀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출매출의 공제항목 계산 및 CIF가격 산정 시 오류, 관세 환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5) 피신청인의 권리적극 활용

피신청인이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및 권한으로 ① 정보열람권 ② 공청회 개최 신청권 및 참가권 ③ 표본선택참가권 ④실사동의권 및 관련정보통보권 ⑤ 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⑥가격승낙제출권과 승낙권 ⑦ 재심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와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관 기관의 실제적 규정 적용오류나 절차상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항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반덤핑 관련 법제의 운용은 유능한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절차상의 위반이나 법 적용 오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3. 産業被害 事前豫告制

중국 대외무역법 제 52조는 “국무원관련부서는 대외무역의 긴급 및 이상 상황에 대하여 화물, 기술 및 서비스 무역에 사전예고 긴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산업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두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장개방과 더불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현재 자동차, 철강, 화학비료 등의 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지정하여 「산업피해 사전 예고」를 시행하고 있다.<sup>52)</sup>

최근에 상무부는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사전예고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商務部關於進一步加強産業損害預警工作的指導意見, (商務部文件, 商調查發(2005)221号)을 발표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산업피해 사전 예고」는 상무부가 주관이 되어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 하에 피해나 피해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기술, 화물 그리고 서비스 무역 등 모든 방면에 적용되지만 특히 화물 무역에서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반덤핑과 세이프가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1) 對象産業確定과 情報收集

대상산업을 확정할 때 그 조건이 되는 것으로 ① 특정 산업이 시장에서 중요한 지

52)中國財政經濟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講話』, (中國財政經濟出版社,2004) ,pp227-228.

위를 접하거나 수입으로 인한 산업 충격이 매우 용이한 산업 ② 산업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업 ③ 소규모지만 국가민생 경제계획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국제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산업 ④ 국가산업정책상 중점 발전 항목으로 유치산업에 해당되는 것을 선정하여 확정한다.

산업피해 예고를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① 국가기관, 동종업 협회, 상공회의소 등과 관련기업의 통계와 연구소에서 제공한 통계 ② 표본조사를 통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한다. 정보 수집은 가능한 공개적으로 하며 선정된 중점산업의 기업 정보를 보충적으로 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수집방식은 공개수집, 통계의 구매, 표본조사, 관련 기업의 자원적인 정보제공의 방식에 의한다. 표본조사방식은 먼저 중점기업을 선정 한 후, 분기별 혹은 월별로 기업에서 제공한 정기적인 통계를 통하여 한다. 중점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접하는 비율이 높거나, 동종업계에서의 대표성, 수출량이 많거나 관련 상품의 주요한 유통기업이라는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는 경우에 선정된다.

## 2) 評價指標와 評價體系

사전 예고를 실시하기 위한 개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① 국제경제발전의 변화와 관련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 ② 산업의 이상 상황이 국내산업에 주는 영향을 정확히 반영 ③ WTO 협정 및 국내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지표의 확립 ④ 현행통계지표와 상호 접목하는 방안의 구축을 지표체계형성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먼저 국내산업의 이상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할 국내산업, 무역, 법률 그리고 경제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진을 구성한다. 평가는 ① 관련 산업의 생산, 경영, 효율 그리고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한 영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및 피해 위협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 산업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국내산업의 이상변화와 국내 상관산업의 관계를 분석하여 즉시 관련 산업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관은 자체적으로 산업피해사전예고 모델을 구축하고, 통계와 계량방법을 통하여 산업피해 상황을 분석 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경제, 무역발전변화의 상황, 산업국제경쟁력 및 사전예고관련 전반적인 정보에

대하여 상무부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 및 각 동종업 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과 관련있는 매체를 통하여 대외에 공포한다. 또한 좌담회나 토론회 그리고 연구보고 발표회 등을 통하여 결과를 공개한다. 관련기관은 사전예고(안) 수립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선택하여 관련 업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감한 상품의 사전예고 관련 정보의 발표는 관련기관 의견을 구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

### 3) 對應方案 檢討

산업피해사전예고는 아직까지 이를 시행한 적도 없는 이제 막 설립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구체화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면 반덤핑과 관련하여 제소전 단계로 이 제도를 시행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산업피해 사전예고를 위한 업종선정 항목을 관련 수출업체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후에 산업피해사전예고(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산업피해나 산업피해 위협이 있다는 판단이 되면 관련기관에서 즉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 반덤핑은 일반적으로 제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서 사전예고제까지 시행된다면 반덤핑 피해판정에 절대적인 증거자료로 채택될 것이므로 피제소자의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전에 동업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수단이라는 것이 결국 가격승낙을 하거나 수출물량 감소의 방법으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관련업계의 대중 수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동종업 협회와 가격승낙을 할 것인지, 반덤핑제소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과 더불어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V. 結論

중국 반덤핑 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WTO 협정보다 오히려 투명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법제의 체계적인 이해와 임시규칙의 폐지와 새로운 제정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과 차이 및 중국특유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리적인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

이다.

현재까지 관련기관의 반덤핑 운용과정에서 무피해 판정사례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비합리적인 판정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반덤핑 제소가 되면 조사단계에 있어서 실사단계나 청문회를 통한 강력한 항변을 하여 최소의 덤핑마진을 판정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응소를 하여야 한다. 실례로 무대응은 입수가능 정보를 통한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마진율을 판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덤핑사건의 특성상 제소되고 나면 외국기업이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기업차원에서도 사전 예방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처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중국 관련기관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차원에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업 스스로 구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김여선

중국(china), 반덤핑(anti-dumping), 사전예고제(advance warning system), 대응방안(tackle)

[ABSTRACT]

## A Study on Cope with Chinese Anti-Dumping Measures

Kim, Yeu-Sun

China enacted the Anti-Dumping Regulations in 1997, and the regulatory body enforcing it, the Ministry of Commerce ("MOC") issued its first decision under the law in December of 1997. China have reformed their laws and regulatory system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in 2003. China's System of Anti-Dumping Regulations are consist of foreign trade law, Anti-Dumping Regulations and few sub-articles. As usual with Chinese laws, the regulations are apparently easy to understand. Since 1997, China imposed a series of punitive duties on sixteen types of imported Korean goods and is investigation to issue more. So,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Chinese Anti-Dumping Measures. This Article has studied on China's System of Anti-Dumping Regulations and try to find a way of Cope with Chinese Anti-Dumping Measures.